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20가단1225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10. 28 선고 2021나30834 판결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20가단122575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
담당변호사 추은혜

피 고 B

변론종결 2021. 6. 24.

판결선고 2021. 8. 12.

주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5,870,1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5,870,1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관계

가. C은 2017. 12. 19.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(위 법원 2017카합20471호 사건), 원고는 2018. 1. 19. C이 담보로 제공할 공탁금 7,000만 원에 관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.

나. 그런데 이후 위 가처분은 취소되었고, 이와 관련하여 C이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3,266,700원으로 확정되었다(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4. 4.자 2018카합1092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).

다.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D이 2019. 5. 7. 원고에게 위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, 원고는 2019. 6. 7. D에게 13,266,70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(위 법원 2019가소28623호), 위 법원은 2019. 11. 22. ‘피고(C)는 원고에게 13,332,124원 및 그 중 13,266,700원에 대하여 2019. 7. 8.부터 2019. 10. 22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‘이 사건 판결채권’).

마. 그런데 위 다.항의 보증보험금 청구 직전인 2019. 5. 1. C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 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)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,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계약’)을 체결한 후,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5. 3.

접수 제168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등기’).

바. 그리고 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설정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,200만 원, 채무자 E, 근저당권자 F의 선순위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(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. 5. 3. 접수 제16850호).

사.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. 5. 21.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채권 원리금 합계는 15,870,196원이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. 다만 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).

2) 제1항에서 본 이 사건 근저당계약일은 2019. 5. 1.이므로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일인 2019. 6. 7.보다 약 한 달 남짓 앞서나,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 2018. 1. 19.경 이미 체결되었고, 2019. 4. 4.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으며, 이후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 및 이 사건 판결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이 사건은 결국 위 근저당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.

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판결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, C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준 것은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근저당계약의 목적이 C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변제자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자신이 변제자금을 제공하여 제1의 바.항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계약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는 위 근저당계약의 목적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(피고는 3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),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1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3734 판결).

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,

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.

2)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최소 6,5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말소된 선순위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,200만 원을 공제하여도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채권액인 15,870,196원을 넘는다.

3) 따라서 위 1)항의 법리상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계약은 위 15,870,19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,870,1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.

판사 윤상도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강원도 강릉시 G 답 1729㎡ 중,

C 지분 1729분의 1067.84 끝.

